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1

발의연월일: 2020. 11. 17.

발 의 자:노웅래・김홍걸・양경숙

윤준병 · 김윤덕 · 임종성

김교흥 · 김민철 · 인재근

소병훈 · 서영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 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 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대규모 신규 사업의 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 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 ----. <단서 삭제> 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 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 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 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1.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 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 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함된 사업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 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 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소기업 분야의 사업

-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
 -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 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 업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공사가 포함된 사업
 - 3.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 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 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 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 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 야의 사업

- ② ③ (생 략)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u>국회</u>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⑤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